상공자원부 고시(제1994-115호)

국내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고시중개정

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에 관한 고시(상공자원부고시 제1994-13호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994. 9. 15
상공자원부 장관

제1조의 제①항 및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

① 가격연동 석유제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.

1. 가격연동석유제품은 아래에서 지정한 석유제품을 말하며, 이의 제조장 반출가격은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격을 그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. 단, 석유정제업자간 거래 및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용으로 공급하는 *B-C*유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적용을 배제한다.

－아 래－

(단위 : 원/ℓ)

가격연동 석유제품	1994. 9. 15 ~ 10. 31 적용가격
무연휘발유	181.48
등유	186.77
저유황경유(0.2W%)	158.33

경 유	150.76
저유황 경질중유(1.0W%)	134.31
저유황 경질중유(1.6W%)	132.15
경 질 중 유	126.85
저유황 중 유(1.0W%)	112.39
저유황 중 유(1.6W%)	107.74
중 유	97.24
저유황 B－C유(1.0W%)	95.94
저유황 B－C유(1.6W%)	89.30
B － C 유	71.06

2. 가격연동방법

○가격연동 석유제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의 최고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결정하며, 매월 1일 0시부터 매월 말일 24시까지 적용된다.

가. 무연휘발유, 등유, 저유황경유(0.2*W*%), 경유, 저유황*B-C*유(1.0*W*%), 저유황*B-C*유(1.6*W*%), *B-C*유의 제조장 반출가격의 최고액

1) 유종별 세포함 제조장 반출가격
= 유종별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+ 특별소비세액(휘발유, 저유황 경유(0.2*W*%), 경유는 교통세액) + 부가가치세액

2) 유종별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
= (유종별 기준국제가격(*P*) + 운임(*F*) + 보험료 + 관세 + 석유사업기금 + 부대비 +수입금융비 + 품질보정치(*Q*) × 환율 + 환차손익 + 국내수송, 저유, 비축 등 국내공급비용
= {(1.013493 + 1.000731 × 관세율) (*P*+*F*) + 석유사업기금 + *Q*} × 환율 + 110*P* × (직전 3개월간 환차) ÷ (직전 3개월간 일수) + 국내수송, 저유, 비축 등 국내공급비용

주 : 1) 유종별 세포함 제조장 반출가격은 원/ℓ로 표시하며, 무연휘발유, 등유, 저유황경유(0.2*W*%) 및 경유는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, 기타 유종은 소숫점 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2) 유종별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의 경우, 무연휘발유, 등유, 저유황 경유(0.2*W*%), 및 경유는 주[1]에 의해 결정된 유종별 세포함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특별소비세액(무연휘발유, 저유황 경유(0.2*W*%), 경유는 교통세액)과 부가가치세액을 역산하여 차감한 가격으로 하며, 저유황*B-C*유(1.0*W*%), 저유황*B-C*유(1.6*W*%)) 및 *B-C*유는 가. [2]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적용한다. (원/ℓ로 표시하되 환산계수는 1배럴당 158.984 ℓ로 하고, 소숫점 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)

3) 유종별 기준 국제가격은 다음과 같으며, 전전월 26일부터 전월 25일간 *Platt's*에 게재된 가격의 날짜 단순평균치를 적용한다. (\$/*Bb*l로 표시, 소숫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)

유 종	기 준 국 제 가 격
· 무 연 휘 발 유	Singapore Mogas 92 unleaded(중간가격)
· 등 유	Singapore Kero(중간가격)
· 저 유 황 경 유(0.2W%)	Singapore Gasoil L/P(중간가격)
· 경 유	〃
· 저유황 B - C유(1.0W%)	Singapore HSFO 180 CST(중간가격)
· 저유황 B - C유(1.6W%)	〃
· B - C유	〃

※Singapore HSFO 180 Cst의 부피환산계수는 1MT 당 6.5Bbl로 한다.

4) 유종별 세전제조장반출가격 산정시 운임은 전천월 26일부터 전월 25일간 *Platt's*지에 게재된 *C&F JAPAN* 가격과 싱가포르 *FOB*가격과의 차이를 평균한 값($/*Bbl*로 표시, 소숫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)으로 하고, 국내수송, 저유, 비축 등 국내공급비용은 상공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값으로 하며, 품질보정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유 종	품 질 보 정 치($/Bbl)
· 무 연 휘 발 유	0.00
· 등 유	0.00
· 저 유 황 경 유(0.2W%)	0.38
· 경 유	-0.81
· 저유황 B - C유(1.0W%)	2.32
· 저유황 B - C유(1.6W%)	1.43
· B - C 유	-2.15

5) 관세율은 당월 1일 유효한 관세율을 적용하되, 당월중에 관세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당일부터 변경된 관세율을 적용한다.
(백분율(%)로 표시, 소숫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)

6)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사업법 제17의 3 제1항 제1호에 정한 수입금으로 당월 1일 유효한 수입금단가를 적용하되, 당월중에 수입금단가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당일부터 변경된 수입금단가를 적용한다.
($/*Bbl*로 표시, 소숫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)

7) 환율은 미국달러의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전전월의 26일부터 전월 25일까지의 날짜 단순평균치를 적용한다. (원/$로 표시, 소숫점 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)

8) 직전 3개월간의 환차는 전월 25일의 환율에서 전전전전월 26일의 환율을 뺀 값을 적용한다. (원/$로 표시, 소숫점 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)

9) 직전 3개월간 일수는 전전전전월 26일부터 전월 25일까지의 날짜수를 말한다.

10) 단, 상공자원부장관은 국제제품가격 급등락으로 국내유가완충이 필요할 경우 본 고시의 연동공식에 의한 가격결정방식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.

나. 기타 가격연동 석유제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의 최고액

1) 유종별 세포함 제조장 반출가격
   = 유종별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+ 부가가치세액
2) 유종별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
   가) 저유황 경질중유(1.0W%)
      = 경유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× 70% + 저유황 B-C유(1.0W%)
       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× 30%
   나) 저유황 경질중유(1.6W%)
      = 저유황경유(0.2W%))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× 70% + B-C유
       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× 30%
   다) 경질중유
      = 경유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× 70% + B-C유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× 30%
   라) 저유황 중유(1.0W%)
      = 경유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× 30% + 저유황 B-C유(1.0W%))
       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× 70%
   마) 저유황 중유(1.6W%))
      = 경유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× 30% × 저유황 B-C유(1.6W%)
       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× 70%
   바) 중유
      = 저유황 경유(0.2W%)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× 30% + B-C유
       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× 70%

주 : 유종별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및 세포함 제조장 반출가격은 각각 원/ℓ로 표시하되 환산계수는 1배럴당 158.984 ℓ로 하고, 소숫점 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
② 대한석유협회는 제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연동석유제품의 유종별·유통단계별 가격을 계산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발표하여야 한다. 단, 대한석유협회는 가격연동 석유제품의 가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석유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부 칙-

1. 이 고시는 '94년 9월 15일 0시부터 시행한다.
2. 1994년 9월 15일부터 1994년 10월 31일까지는 가격연동석유제품에 대하여 본 고시 제1조 1항의 '= 아래 ='에 지정된 '1994년 9월 15일 ~ 10월 31일 적용가격'을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의 최고액으로 한다.